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(이하 ‘전공대학’)의 교지기준은 전공대학 인가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을 준용하고 있어 타 법령의 개정에도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,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전공대학 근거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공대학 관리·운영을 체계화·안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지기준 규정(안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의2)

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, 교지 기준은 현재 전공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호 전단 중 “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”를 “제30조의2”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)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1. 교지가 도로·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
2. 교지 경계선(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)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.

1. 농장·학술림·사육장·목장·양식장·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
2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·건축물의 부지
3.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
-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.
- ④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기존의 교지 밖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)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(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)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)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0조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(校地)를 확보할 것.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.	3. 제30조의2----- -----.
4.·5. (생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30조의2(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)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

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1. 교지가 도로·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
2. 교지 경계선(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)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.

1. 농장·학술림·사육장·목장·양식장·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
2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·건축물의 부지
3.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

	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. ④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기존의 교지 밖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)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의 부지는 기존의 교지(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)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381